

인천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1가단23065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10. 27.

판 결 선 고 2021. 11. 17.

주 문

-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9. 5. 1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9. 10. 접수 제4073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42127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2. 2. ‘C는 원고에게 14,779,850원과 그 중 5,095,611원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 1) 망 D와 E은 부부이고, 그 사이에 자녀로 피고와 C가 있다.
- 2) 망 D은 2019. 5. 13. 사망하였고, 망 D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5.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9. 10. 접수 제40731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다. C의 무자력

C는 망 D의 사망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서인천세무서, 인천 서구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따른 양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무상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감소를 자겨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재산 상태, 피고와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망 D와 E이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이자 전 재산으로 망 D의 사망에 따라 당연히 E의 단독 소유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E은 별다른 수입이 없이 오로지 피고가 지급하는 생활비로 생활하면서 담보 대출금 등을 부담하여 오다가 생전 부양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준 것이고 C 또한 피고가 그 동안 부모님의 생활비 등을 혼자 부담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 전후로 망 D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약 37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만약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피고는 지금까지 망 D와 E에게 지급한 대가를 모두 반환받아야 한다. 또한 피고는 1989.경 이후 주로 해외에 거주하면서 C와 왕래를 하지 아니하여 C의 재산 상태를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망 D와 E이 이 사건 부동산에 함께 거주하여 왔다는 것만으로는 망 D의 사망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분에 관계없이 E의 단독 소유로 귀속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E, 망 D을 부양하면서 생활비를 지급하여 왔다는 등의 사정은 E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은 될 수 있으나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으로 손해의 전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피고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그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36333 판결 등 참조),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마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8. 5. 마쳐진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9. 2. 5.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9. 11. 7. 말소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등기원인이 2019. 5.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된 것은 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의 등기원인일자(등기예규 제438호)'에 따른 것이고, 실제 피고와 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이후이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20. 9. 10. 무렵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F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원인은 2019. 2. 5. 해지로, 망 D의 사망 이전에 이미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인혜